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231호

2026년도 하반기 대전청사관리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대전청사관리소에서는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수 인재의 선발을 위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대전청사관리소장

Ⅰ. 채용개요

1 채용 방법 및 분야 등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

※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학력, 경력, 자격증, 거주지 등 제한없이 응시 가능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4명	정부대전청사 (대전 서구 소재)	○ 정부대전청사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 정부대전청사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정부대전청사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 정부대전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활동 및 순찰 ○ 그 밖에 대전청사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채용 일정

* 채용일정은 시험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체력검사 및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9.28.~10.8.)	서류심사 (10.29.)	체력 인증서 제출 (11.6.)	인성검사 (11.17.)	최종합격자 발표 (12.4.)
원서접수 (10.6.~10.8.)	합격자 발표 (10.30.)	합격자 발표 (11.10.)	면접시험 (11.24.)	

※ 시험장소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진행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https://gbmo.go.kr)에 게시 예정

3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18세 이상인 자(2008. 11. 24. 이전 출생자)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60세 미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 후 바로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배점비율	적용시기	비고
관련분야(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군사경찰) 근무경력	총 배점의 7%범위	서류심사	각 경력 합산 적용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총 배점의 10%범위		자격증 등급 및 소지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총 배점의 10%범위		
공인 무도단증(1~3단) 소지자	총 배점의 8%범위		
사무관리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총 배점의 5%범위		

○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❶, 「청원경찰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❷, 방호 관련 공무원❸, 군사경찰❹ 근무경력이 있는 자

❶ 경비업법상 특수경비가 아닌 기타 법령에 따른 특수경비, 일반경비는 해당 없음

❷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민간기업 등 청원경찰은 해당 없음

❸ 방호 관련 공무원의 예 : 방호직 공무원, 법원경위, 법원보안관리대, 교정직 등

❹ 군사경찰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일반 군대경력(사병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기간(상근·비상근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또는 직위), 담당업무, 근무(발급)기관 명칭·직인, 발급자 성명·연락처(전화번호, e-mail 등)**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대사항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수경비, 청원경찰, 방호 등 관련 직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필요 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 기재 시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함(「민법」 제160조에 따라 경력 계산)

◦ 전임 근무(상근)인 경우 주40시간(8시간/일)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인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전임 근무(상근)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비상근)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비상근) : 서류심사에서 경력 인정범위 결정

※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Ⅱ 3. 마. (2)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을 준용함

▸ **폐업회사의 경력**인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해당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해당 보험공단 발급 가능), ③ 해당 기간의 소득금액증명(홈택스 발급 가능),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4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고, 서류 미제출, 내용 미흡 등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경력의 인정 여부는 서류심사 시 판단할 예정임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예정임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인 무도단증(1~3단) 소지자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별첨 2]에서 발급된 무도단증 중 단수가 가장 높은 1개만 인정

○ 사무관리 및 정보화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둘 이상 제출한 경우 등급이 가장 높은 1개만 인정함

※ 자격증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 '12. 1. 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1급만 인정(워드프로세서 2급·3급은 불인정)

▸ '자격증(무도단증 포함)'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 불가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자격증은 소지 여부로 판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우대요건을 위한 자격(증) 요건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5 가점사항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가점 비율
법정가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총 배점의 10% 또는 5%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총 배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 적용). 또한, 가산 점수의 합계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13% 초과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은 취업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면접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상·중·하의 개수로 평정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시험단계마다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Ⅱ. 채용 세부계획

1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6. 10. 6.(화) ~ 10. 8.(목) 18:00까지**

○ 접수처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07호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자(☎042-481-6006)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 시 유의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서식[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 후 목록과 서식 모두 등기우편으로 제출
- 봉투 겉표지에 [대전청사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공고 29쪽 서식 활용)
-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달분부터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고, **방문·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 1주일 이내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
 ※ 기간 내 미통보 시 접수처 채용담당자(☎042-481-6006)에게 반드시 확인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지원할 경우 제출한 응시원서 전부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원서가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상의 내용은 변경 불가
-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응시원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자격요건 및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금지(심사 이전에 제외 처리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시험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에 유의

< 필수 제출서류 (전 응시자)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또는 면제 대상 증명서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제출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서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첨부

※ 아래 해당하는 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2명 이상의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 복지로 등)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④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① 관련분야 근무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자(연락처 포함) 및 발급기관 직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②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사본 1부

③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사본 1부

④ 공인 무도단증 사본 1부

⑤ 사무관리 및 정보화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사본 1부

⑥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3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격(국적, 연령 등) 적합성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자기소개서, 경력 등 실질심사 실시

【서류심사 평가기준】 채용기본계획, 공고상 제시된 기준 등에 따른 정성·정량 평가

-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정량평가 : (우대요건 및 가점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등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함

○ **합격자 발표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4 체력시험

○ 시험대상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

○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와 국민체력100 체력평가지(원본 또는 사본)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지역별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인증서로 추후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바코드가 표기**된 체력인증서 앞장을 반드시 제출

- 인증일자가 공고일(‘26.9.28.) 이후인 경우만 인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예약은 특정일(매월 1일/ 16일 오후1시)에만 가능하므로, 채용공고일 이후 지원자는 체력 인증서 발급 준비 권장함

○ 합격 기준: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 2등급** 이상(1등급, 2등급)

구분	인증 기준
1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30% 이상, 운동체력 중 한가지가 상위 30% 이상(신체조성 제외)**
2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50% 이상, 운동체력 중 한가지가 상위 50% 이상(신체조성 제외)**
3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상위 70% 이상, 신체조성이 건강 권장 범위일 때

○ 제출 기한: ’26. 11. 6.(금) 18시까지

○ 제출 방법: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하여 유효함

○ 측정 항목: 체격 및 체력 15개 항목

구 분	요 인	측정 항목
체격	신체 조성	신장(cm)
		체중(kg)
		체지방율(%)
		허리둘레(cm)
		BMI(kg/㎡)
건강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회)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 검사
		스텝 검사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운동체력	민첩성	10m 4회 왕복달리기
		반응시간(초) 검사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cm)
		체공시간(초) 검사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참고(https://nfa.kspo.or.kr)

5 인성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심사 응시 불가**

6 면접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의 방식으로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총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 중 ·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체력시험 상위등급을 우선순위로 결정

7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발표 : 응시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및 응시자격 등 결격사유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정규임용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임용승인 후 최종 임용

※ 관련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임용자격·임용방법 등)

Ⅲ. 보수 및 근무시간

구 분	내 용
보 수	▪ 봉급 : 월2,133,000원(1호봉 기준, 제세공과금 공제 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정부대전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33조에 의거, 보수 산정 시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최대 2년) 경력만 산입 ▪ 수당 : 추가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은 봉급과 별도 ※ 수당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름 ▪ 4대보험(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근무시간	▪ 4교대 근무체제 - 주간: 08:00~17:00 또는 10:00~19:00 - 야간: 17:00~다음날 08:00 또는 18:00~다음날 09:00 - 전일: 09:00~다음날 09:00 ※「정부대전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16조에 의거, 청사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추가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Ⅳ. 기타 유의사항

○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정부대전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1호봉부터 시작함. 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최대 2년)을 호봉에 반영하며, 그 외의 경력은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및 필수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우대요건 증명서류는 인정요건을 갖추어 첨부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음

○ 시험장 내에서는 공정한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며(휴대폰 촬영 등),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제한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임용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 서류(원본)의 반환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반환 신청은 접수처에 유선으로 요청한 후 별지 제8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보내는 주소: 접수처와 동일) 또는 메일(lss1283@korea.kr)로 신청하여야 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등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부정청탁자는 본 시험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3항 등에 따라 조치됨을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거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 및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 관련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 042-481-6006)
- 직무 관련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청원경찰 담당(☎ 042-481-6023)

[별첨 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주요업무	○ 정부대전청사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 정부대전청사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정부대전청사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 정부대전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활동 및 순찰 ○ 그 밖에 대전청사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 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업무 이해도)**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청사 방호 개념, 청원경찰의 역할, 상황 대응 요령 및 상황보고 체계 ○ **(직무분야 역량)** -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통제, 보안검색, 민원 대응 능력 등 문제 해결 능력 및 신체적 관리

필요지식	○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기·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

응시자격 요건	관련분야 : 청사방호 및 관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군사경찰(장교 또는 부사관)) 근무 경력자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인 무도단증 소지자 ○ 사무관리 및 정보화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별첨 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60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7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별첨 3]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사본(예시)

제 가16-1-030-03530 호

SAMPLE

체력인증서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85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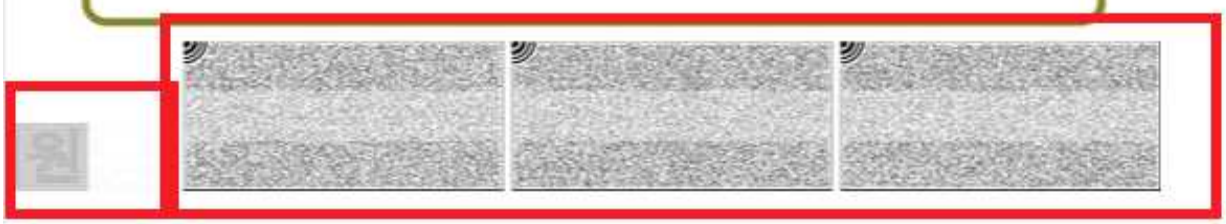
인증등급 : 1등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 증 일 : 2016년 12월 6일

발 급 일 : 2023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명	성별	연락처
※담당자 기재	청원경찰 (정부대전청사)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선택사항은 비고란에도 반드시 기입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지양**
(예: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지 않게 주의(필요 시 앞자리만 표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여부	비 고
< 필 수 사 항 >		
1. 응시원서 1부	□제출 □미제출	
2.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1부	□제출 □미제출	
3. 이력서 1부	□제출 □미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제출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제출 □미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제출 □미제출	
< 선 택 사 항 >		
7.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부)	□제출 □미제출	
8.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1부	□제출 □미제출	
9. 응급구조사 자격증 (□ 1급, □ 2급) 1부	□제출 □미제출	
10. 공인무도단증 (단) 1부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에서 발급받은 무도단증 중 단수가 가장 높은 1개만 제출	□제출 □미제출	(기재사항 예시) 태권도 합기도
11. (□ 컴활 1급, □ 컴활 2급, □ 워드) 자격증 1부 ※ 소지한 자격증 중 등급이 가장 높은 1개만 제출	□제출 □미제출	
1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제출 □미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전청사관리소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분야 **(근무지)**	**청원경찰** **(정부대전청사)**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 * *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주 의 사 항

1.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이후 1주일 이내(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문자로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이며, 기간 내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기관(채용담당자 042-481-6006)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서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구매 후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응시원서 작성요령)는 제출하지 않음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청원경찰(정부대전청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주소 등은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또는 'X'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 행정수수료용)를 응시원서 뒤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근무지)	청원경찰 (정부대전청사)	성 명	

2. 우대사항

1)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군사경찰(장교, 부사관)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예시) 0000	18.1.1. ~18.12.31.	사원	청원경찰	주 00시간

2) 자격증(경비지도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시) 경비지도사	'00.00.00	0000

3) 자격증(응급구조사)

자격증명	등급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시) 응급구조사	1급	'00.00.00	0000

4) 무도단증 ※ 증빙서류는 보유한 무도단증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단증 1개만 제출

무도명	무도등급	취득(예정일)	단증번호	발행기관
(예시) 태권도	3단	'00.00.00	000호	0000

5) 자격증(사무관리분야) ※ 증빙서류는 취득한 자격증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제출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	'00.00.00	0000

6)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등 증명서

관련법률	보훈번호	가점비율	발급처
(예시) 국가유공자	000호	10%	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자필로 작성

※ 작성 시 예시(회색 글자)는 삭제하고 해당사항 작성(검정색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청원경찰(정부대전청사)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이해**

(자신이 생각하는 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지원동기 및 향후 계획**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을 적으시오)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2026. . .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글꼴 휴먼명조, 글자 색 검정색, 글자 크기 13pt, 줄 간격 160%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반드시 동의란 체크 후 하단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분야 (근무지)	**청원경찰 (정부대전청사)**
생년월일			

본인은 대전청사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대전청사관리소가 실시하는 자격증,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청사관리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반드시 동의란 체크 후 하단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전청사관리소에서는 **청원경찰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자우편주소,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족관계, 우대요건 및 가점사항에 따른 경력,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범죄경력,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신체건강에 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대전청사관리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②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6.6.30	*'19.7.1*	*㈜ 00*	*사원*	*OO항만시설 특수경비*	*시간제 주 35시간*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②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또는 전임/시간제근무 등)** 및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 : 상근 주 40시간, 시간제근무 주 35시간 등)
③ **발급자**(해당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④ 발급자 또는 확인자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 인사담당자 포함

[별지 제8호 서식] ※ 응시포기 등 응시원서의 반환을 원할 때 작성하여 제출(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30일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청사관리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우편번호 :)

응시분야 :
청원경찰(정부대전청사)

연락처 : 휴대전화 ()

받는 사람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07호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채용담당자

연락처 : 042-481-6006

[대전청사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